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104호 2015. 7. 29.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-102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, 단체장 『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. 7. 2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조례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2. 제안사유

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,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업무비중을 분산하고자 하며,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에 따라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내역을 명시화 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 조례 제2조 제4호의 "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" 으로 되어있으나, 상위법 개정에 따라 "법 제10조의3에따른 이행강제금"으로 개정 필요

나.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 변경

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내역 명시화(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)

- 제0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라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도시재생경관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소:401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, 3층(심곡동, 경인빌딩)
 ☎ 032)560-4182, FAX 032)560-2749]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의견사항

5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개 정 이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개정필요 ○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업무비중을 분산 하고자 함. - 내실있는 위원회운영을 위한 - 2015년도 위원회 정비계획【기획예산실-9969(2015.6.4)】에 의거 ○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: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내역 명시화
주 요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 제2조 제4호의 "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"으로 되어있으나, 상위법 개정에 따라 "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"으로 개정 필요 ○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 변경 ○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내역 명시화(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) - 제0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 ○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개 정 안	“별지 참조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별지 참조”
관계 법령 발체	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0조3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2제4항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관련 사업 계획	“해당 없음”
예산 수 반 사항	“해당 없음”
기타 참고 사항	“해당 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”를 “관리법」 제6조의2”로, “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”으로, “운용에 관하여”를 “운용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

제2조제4호 중 “제20조의2”를 “제10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”을 “운용관리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0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구청장”을 “도시관리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

을 “도시재생경관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5급이상”을 “5급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옥외광고관련”을 “옥외광고 관련”으로, “자로서 당해”를 “사람으로서 해당”으로, “있는”을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하여 임명된 자”를 “따라 임명된 사람”으로, “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”를 “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연”을 “해당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40일전”을 “4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80일이내”를 “8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를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<u>운용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관리법</u> 제6조의2 ----- ----- -----<u>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</u> ----- -----<u>운용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기금</u>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--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</u> 2. 3. (생략) 4. <u>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</u> 5. 6. (생략) 7. <u>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</u>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<u>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<u>제10조의3</u> ----- 5.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
<p>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<u>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</u> 세입</p>	<p>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----- -----<u>따라</u> -----</p>

· 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

3.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제2호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운용관리를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-----
-----.

③ -----도시관리국장 -----
-----도시재생경관과장 -----.

④ -----해당하는 사람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5급 이상 -----

3. 옥외광고 관련 -----
-----사람으로서 해당 -----

-----있는 사람 -----

⑤ -----따라 임명된 사람 -----

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8조(간사 및 수당 등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(생략)

-----제3호에 따라 -----

-----.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-----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그 밖의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수당 등) ① -----
-----1명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(생략)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기금결산) ① 구청장은 출

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③ -----
-----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-----
-----.
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연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의 -----

③ -----따라 -----
-----40일 전 -----
-----.

제11조(기금결산) ① -----

-----80일 이내 -----
-----.

② -----따른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p>③ 제1항에 <u>의하여</u>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 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 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·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<u>예에</u> <u>의한다</u>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<u>재</u> <u>무회계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③ -----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<u>예를</u> <u>따른다</u>.</p> <p>② ----- ----- <u>재무회계 규칙</u>」 -----.</p>
---	---

관계법령 발췌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리법 제10조3(이행강제금)

- ①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(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(戒告)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3.8.6.>

[전문개정 2011.3.29.]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리법 제6조2제4항(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)

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, 경관 개선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, 그 밖에 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3.29.]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